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(정정)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(정정)합니다.

1. 징계대상

- 가. 성 명: 오 영 준
- 나. 생 년 월 일: 1958.12.09.
- 다. 소 속: 소속없음(정정)

2. 징계내용

- 가. 징 계 종 류: 업무정지 6월
- 나. 효력발생일: 2024.10.30. ~ 2025.4.29.
- 다. 사 유: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,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4년 10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